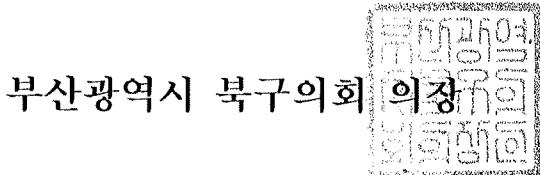


##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
「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19일



### 1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 2. 개정사유

지방의회의원은 지원체계 미흡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조례 제·개정안 입안과 의안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입법고문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입법 및 법률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(구포동), 팩스 309-4099)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(051-309-4098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# **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

「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」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**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1.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
2.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

②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(자문사항)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2. 부산광역시 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

3.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,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

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
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

3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

제4조(자문요청 등) ①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촉기간)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해촉)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

3.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
4.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

5.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6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제7조(회의)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·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「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자문 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 승 낙 서

본인은 「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 고문(법률고문) 위촉을 승낙합니다.

20○○년 월 일

직위

성명 (인)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# 위촉장

직위

성명

귀하를 「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 
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 
의회 입법고문(법률고문)으로 위촉합니다.

20○○년 월 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직인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사건 실적부

구분 종류	사건명	의뢰년월일	의뢰내용	회신년월일	회신내용	비고
소송사건						
이의신청						
의안심의 시 법률자문						
법령해석						
기타						